

[국회토론회]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손배가압류를 통해 본 가압류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일시 | 2023년 11월 30일(목)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주최 | 손잡고, 전국금속노동조합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국회의원 박주민, 우원식, 이탄희,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프로그램

- 14:00 사회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 14:05 축사 주최 인사말
- 14:15 발제 **한국옵티칼하이테크를 비롯한 노동사건에서의 가압류 제기에서 볼 수 있는 특징과 문제들**
탁선호 변호사, 금속법률원
- 14:40 토론1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투쟁과 가압류 이후 노동권 침해 실태**
최현환 지회장,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 14:50 토론2 **최장기간 노동사건 가압류 당사자 사례**
김득중 지부장, 쌍용자동차지부
- 15:00 토론3 **노동사건에 민사 가압류 제도를 적용하는 것의 함의**
정영훈 교수, 부경대학교 법학과
- 15:10 토론4 **노동사건에 적용된 가압류 제도에 대한 법무부 입장**
법무부 법무심의관(섭외 중)
- 15:2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15:30 폐회

목차

인사말 04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이탄희
국회의원 이은주
박래군 손잡고 상임대표
윤장혁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발제문

노란봉투법에 비추어 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가압류 사례 | 탁선호 16

토론문

- 1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투쟁과 가압류 이후 노동권 침해 실태 | 최현환 42
- 2 최장기간 노동사건 가압류,
쌍용차 정리해고반대파업에 대한 가압류 사례 | 김득중 45
- 3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가압류 결정의 부당성 | 정영훈 51
- 4 노동사건에 적용된 가압류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 | 법무부 57

인사말



박주민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은평갑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오늘 가압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북 구미의 일본계 외투기업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이 청산을 추진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해고 노동자들의 고용대책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압류를 강행해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구미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이후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청산을 결정했습니다. 구미 공장에서 평택 공장으로 생산을 이전하고 전 직원에게 희망 퇴직을 제안했습니다. 210명의 직원 중 193명이 퇴사하고 17명이 남았습니다. 남은 노동자들은 평택공장에서 계속 일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화재를 이유로 공장을 폐쇄하는 것은 기업이 결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공장폐쇄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평택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서라도 계속 일하고 싶다는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대책을 요구하는 해고 노동자들의 부동산이나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하고 공장철거 작업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즉시 소송을 취하하고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이 사례는 가압류 제도의 문제점을 잘 보여줍니다.

현재 남은 12명의 조합원 가운데 재산이 있는 10명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가압류는 신속성과 비밀성이 특징인 보전 절차입니다. 본안 소송보다 입증 부담이 가볍고 상대방 모르게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이용자가 가압류결정을 받아내어 개별 구성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동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손해배상의 한도에 대한 규제보다도 가압류규제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를 모시고 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압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의 성공적인 결과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우원식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원식입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손배가압류를 통해 본 가압류 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22년 9월, 글로벌 자동차부품사인 일본 덴소의 한국자회사 한국와이퍼에서 고의적자 및 기획청산 의혹과 함께 청산절차와 일방적인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먹튀 일본자본 덴소의 ‘고의청산’과 노동법 위반 문제를 제가 처음 제기했고 결국 지난 8월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의 본격적 투쟁이 시작된 지 약 1년 만에 한국와이퍼 노사는 합의로 사태를 마무리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구미에서도 해결되지 못한 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본 니토텐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투기업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이하 한국옵티칼)는 2003년 구미산단에 입주할 당시 50년 토지 무상임대, 법인세·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았음에도 일방적인 정리해고와 가압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원 10명에게 4억 원의 가압류가 결정된 가운데 5명에게는 생존권이 걸린 전월세보증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만든 것도 모자라 인간생활에 기본이 되는 주거문제에까지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파괴하는 유력한 수단이 바로 손배가압류입니다. 노동쟁

의에 대한 손해가압류 청구는 실제 돈을 받으려는 목적이라기보다 노동쟁의에 대한 봉쇄소송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소송 기간에 노동자들의 통장과 재산을 가압류로 묶어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노동3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의된 노란봉투법이 지난 11월 9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공공연하게 이를 무력화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법원에서 지나치게 좁게 인정되고 있는 합법적 쟁의의 범위를 헌법과 국제적 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확대하여 노사관계와 노동쟁의를 정상화하자는 것입니다. 사실상 무력화 되어 있는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실현일 뿐입니다. 동시에 노동자들이 갚을 수도 없는 천문학적 손해배상으로 노동기본권을 침해했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노동인권법이기도 합니다.

프랑스는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 영국은 배상의 상한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백억의 손해가압류를 무기처럼 휘두르는 상황을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주신 의견들을 잘 듣고 모아 노조법 3조 개정안의 통과와 한국옵티칼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이탄희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시 정 국회의원 이탄희입니다.

오늘 <한국유틸리티테크 노동자 손배가압류를 통해 본 가압류 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 준비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바쁜 일정에도 사회를 맡아주신 김혜진 대표님과 모든 발제자·토론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9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2014년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떠안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위해 시민들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전달하기 시작한 지 10여 년 만입니다. 노동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목소리가 우리 정치권에 닿아 작은 싹을 피워내는데 10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하나의 벽이 더 남았고, 그 벽을 넘지 못했을 경우의 제도적 돌파구 또한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노란봉투법에서 다루지 못한 사각지대에 대한 입법적 논의도 시작되어야 합니다.

특히 노동사건에서의 가압류 제도는 사용자 측이 담보제공을 하고 가압류결정을 받아 노동조합원 개인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에 비해 간단하고 신속하게 상대방의 처분권을 박탈할 수 있으며, 법원도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가압류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손해액 가압류 신청으로 전세보증금이 묶여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의 상황이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업한 노조를 기업이 손배소로 ‘징벌’하는 관행은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리가 짓밟히는 일을 제도가 묵인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 노동환경 변화에 있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지금, 오늘 토론회가 정당한 노동권의 행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국회의원 | 정의당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입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손배가압류 사례를 통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노란봉투법 제정에 누구보다 앞장서 주셨던 단체인 ‘손잡고’를 비롯해 금속노조,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박주민, 우원식, 이탄희 의원님과 함께 열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내실있게 준비해주시고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노동자는 물론 그 가족들의 삶까지 파탄냈던 비인간적인 손배가압류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합의가 높아지면서 비로소 20년 만에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다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가운데 또다시 지난한 시간을 예고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노란봉투법이 여기까지 오는데 함께 힘모아 주신 모든 분들께 법안 대표발의자로서 이 자리를 빌어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사례는 쌍용차지부, 상신브레이크지회도 그랬던 것처럼 손배 입증을 위한 본안소송 전에 이미 가압류 절차가 집행된 점과 조합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면서 심지어 부동산을 넘어 조합원 전월세보증금까지 가압류한 것으로 헌법의 노동권이 어떻게 억압받고 봉쇄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노란봉투법이 왜 필요하고, 향후 무엇을 더 보완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사례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원청 직접교섭, 근로조건으로 창의범위 확대, 법원

의 손배 책임범위 확정 등 큰 변화와 성과도 있었지만,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사례처럼 노조 활동을 봉쇄·위축시키는 조합원 개인 청구 제한, 노조 손배청구액 제한 조항이 최종 법안에는 담기지 못해 너무 안타깝습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 노동권을 극단적으로 침해하는 손해배상의 규제, 원칙적 가압류 금지 등 손배가압류 제도 개선을 위한 보완입법 과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길 기대합니다. 저와 정의당도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수많은 무권리 노동자들이 온전히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사말



박래군 손잡고 상임대표

노동자는 손해에 대한 소명 없이도 가압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잡고 상임대표 박래군입니다.

지난 1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이 언제 행사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이때에 한국유틸리티테크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가압류 문제를 짚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는 사용자의 범위를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으로 넓히는 내용과 함께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행위를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괄적으로 파업 참가자들에게 거액의 손배폭탄을 안겨왔던 관행에 제동을 거는 내용입니다.

이런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사회에서 그만큼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제약을 받아왔으며,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손배폭탄이 너무도 가혹했다는 반성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더구나 손해배상이 청구되기도 전에 가해지는 가압류는 더더욱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끼친 손해에 대한 소명도 없었음에도 가압류가 가해졌습니다.

노동자 13명이 1년 동안 빈 공장을 지켜왔습니다. 공장 철거를 강행하려는 사측의 시도가 있었고, 단수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해진 가압류는 4억 원입니다. 압류할 부동산이 있는 노동자에게는 부동산을 압류했고,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전월세 보증금을 압류했습니다. 손배폭탄도 문제지만, 아무런 제한 없이 너무도 쉽게 노동자와 그 가정의 마지막 버팀목인 전월세 보증금마저 가압류로

잡힐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의 닛토덴코 자본의 투자한 외국투자기업입니다. 일본 닛토덴코 자본은 평택에도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가동 중입니다. 일본 덴토자본은 이 공장에서 한 해 8천억 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렸는데, 갑자기 공장 화재를 이유로 폐업해 버렸고, 노동자들을 해고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노동자들은 평택 공장으로 고용승계를 주장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외국투기자본의 먹튀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외국자본의 먹튀행태를 제한할 수 있는 길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서는 노란봉투법의 필요성과 나아가 가압류 제도의 문제점까지 두루 살피게 됩니다. 토론회 발제를 맡아주신 탁선호 변호사,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토론회를 손잡고와 함께 주최해주신 금속노조,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박주민, 우원식, 이탄희 국회의원,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잘못된 가압류 제도를 뜯어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향후 대안을 찾아가는 첫 걸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말



윤장혁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금속노조 위원장 윤장혁입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이 일본 닛토덴코 자본의 ‘먹튀’에 맞서 싸운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투쟁의 본질은 먹튀에 있습니다. 닛토 자본은 구미에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평택에 한국니토옵티칼이란 외국 인투자기업을 세우고 천문학적인 부를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약 20년 동안 두 곳에서의 생산 활동으로 지금까지 17조원을 넘게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구미공장 노동자 12명의 평택공장 고용승계 요구를 매몰차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노동자에게 가압류를 걸어 투쟁을 포기하도록 탄압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위원장으로서 너무 많은 손배가압류 사업장을 목도해야만 했습니다.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도 모자라 스스로 목숨까지 버리는 일을 지켜볼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 이후 곡기를 끊고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자 사회의 목소리가 모였습니다. 20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자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서, 현재 한 달 넘게 직장폐쇄 중인 부산의 의료기기 제조업체 아이리에서 손배가압류 카드를 꺼내고, 또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지 않으면 현재 진행 중인 노조 탄압, 노동자의 기본권과 생존권 박탈이 끊이질 않을 것입니다. 금속노조 위원장은 조합원의 목숨을 지켜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의 공포, 이는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막을 방법입니다.

이번 토론회가 가압류 제도가 어떻게 현장에서 악법으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고, 헌법이 명시한 노동3권의 온전한 보장을 위해 법과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금속노조는 한국유틸칼하이테크 노동자의 손배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고,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에 비추어 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가압류 사례

탁선호 / 변호사, 금속법률원

1. 노동가압류 사건에서의 부진정연대책임

가. 손해배상·가압류 폭탄 대신 총알¹⁾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23. 8. 말경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해고노동자 10명을 채무자로 하여 부동산·채권 가압류 결정을 얻어냈다. 회사는 노동조합과 해고노동자들이 화재가 발생한 공장건물의 철거공사를 위법하게 지연시켜 1일당 약 397만 원 또는 467만 원이라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회사는 손해액 중 일단 4천만 원을 피보전권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로 하면서 해고노동자 1명당 청구금액을 각 4천만 원으로 하여 부동산 가압류 및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부동산 가압류 사건과 채권 가압류 사건의 청구금액은 각 2억 원, 따라서 총청구금액은 총 4억 원이다.

1) 4천만 원이 적은 금액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한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무시무시한 금액의 손해배상·가압류 폭탄과 대조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총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폭탄이나 총알이나 노동자들의 삶 자체를 파괴하고 노동조합을 쫓대밭으로 만드는 살상무기인 것은 마찬가지다.

주 문

채무자들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들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들은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청구금액 금 200,000,000 원

(채무자 박 40,000,000원, 채무자 이 40,000,000원, 채무자 이

40,000,000원, 채무자 박 40,000,000원, 채무자 송 40,000,000

원)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조합원 5명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여전히 부진정연대책임 법리에 따라서 개별 조합원들에게 자신들이 주장하는 손해액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책임제한법리에 따른 개별 노동자들의 책임제한은 책임성립 이후 법원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판단할 문제이므로, 소명만으로 사실인정을 하여 잠정적인 처분을 하는 가압류 절차에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태도로 보인다.

부진정연대채무란 여러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채무에 대하여 각자 독립하여 채권자에게 전부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로 연대채무자에 비해서 채권자의 지위가 강화되어 있다. 이러한 부진정연대채무 법리는 자기책임 원칙의 예외로서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민사법상 법리다.²⁾ 채권자는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 중 누구에게든지 그 채무 범위 내에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한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채권자의 채권

2) 민법 제760조 제1항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인의 행위가 서로 관련 공동하여 하나의 위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를 협의의 공동불법행위라고 한다. 판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가 독립하여 개별적으로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피해자는 각 가해행위의 일반 불법행위 성립요건(고의·과실, 위법성, 책임능력, 위법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및 각 가해행위의 관련공동성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주석민법 채권각칙 408쪽 참고).

만족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 변제 등과 같은 사유 외에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이러한 부진정연대채무 법리는 노사관계라는 국면에서 회사의 노동조합 위축 전략을 관철하는 근거가 되어 왔다.³⁾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례에서처럼 개별 채무자들에게 손해총액에 대한 책임을 묻는 부진정연대책임 법리에 따라 가압류 결정을 하면 이론적으로 청구금액은 무한대가 될 수 있다. 가압류 결정이 변제와 같은 채권의 만족이 아니라 장래의 집행불능·집행의 현저한 곤란에 대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재산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이기 때문이다.

가령 4천만 원의 손해를 주장하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장래에 집행불능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채무자 100명의 재산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각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주장하는 피해는 4천만 원이지만 고통은 증폭된다. 사용자는 4천만 원이라는 피보전권리 총알 한 방으로 효율적으로 무한대의 조합원들에게 고통을 가할 수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과 분쟁상태에서 조합원들에게 심리적·경제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사용자라면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하여 전액 보증보험 또는 일부 현금으로 담보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큰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노조법 2·3조에는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에서 제안했던 내용(이른바 원조 노란봉투법)들이 상당 부분 누락되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용자’ 및 ‘노동쟁의’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제2조 제2호, 제5호), 손해배상 의무자별 책임 범위 제한과 신원보증인에 대한 면책(제3조 제2·3항) 등 헌법에서 노동3권을 보장한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 노조법에서 손해배상 의무자별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제3조 제2항(신설)은 노동3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자기책임 원칙에 따른 책임부담’ 또는 ‘책임의 개별화’를 명문화한 것이다. 여기에는 이른바 개별 노동자가 감당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금액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식을 통해 고통을 가하는 이른바 손해배상·가압류 폭탄에 대한 일정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반영되어 있다.

3) 가령 A, B, C, D가 참여한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1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는 노동조합 탈퇴를 약속한 조합원 A를 제외하고 B, C, D에게 10억 원의 손해에 대해서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B가 다시 노동조합 탈퇴를 약속한다면 회사는 B에 대해서 소취하를 하더라도 C, D에 대하여 여전히 10억 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조합원 1명도 회사의 가압류 결정으로 입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자 결국 버티지 못하고 해고 투쟁에서 이탈했으나, 다른 9명에 대한 가압류 청구금액은 그대로 남아 있다.

현행	개정안
<p>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 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 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수 없다. <제2항과 제3항 신설></p>	<p>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① (현 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법원은</u>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 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 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u>각 손해의</u> <u>배상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u> <u>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u> <u>하여야 한다.</u></p> <p>③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 고 신원보증 인은 단체교섭, 쟁의행 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p>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⁴⁾은 노동3권 보장과 손해의 공
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을 고려하였을 때 쟁의행위를 결성·주
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개별 조합원의 책임 제한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
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현실적인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등을 종합적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
다. 법원이 노동3권 행사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개별 노동자들이 손
해 발생에 기여한 정도, 그리고 임금 수준 등도 고려하여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개정안 제3조 제2항은 표현방식은 다르지만,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동일하
게 노동3권 행사 국면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부진정연대책임 법리를 그대로 적
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자기책임 원칙에 따른 책임부담’ 또는 ‘책
임의 개별화’를 명문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가 2010. 11. ~ 12. 사이 25일간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 CTS라인을 25일간 접거하
면서 파업을 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다.

물론 노동3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의 개별화’를 명문화한다고 하여 손해배상·가압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 폭탄을 제한하고 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므로, 책임 범위를 어떻게 개별화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무엇보다 현행 법과 판례법리상 위법행위로 포섭되지 않는 정당한 정의행위 등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의 제한과 관련하여 이른바 원조 노란봉투법에서 제안되었던 중요한 내용들(사용자가 원인을 제공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제한,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원칙적 제한, 소권 남용의 금지 등)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는 빠져있다.

본 발제문에서는 조금 논의의 지형을 좁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례를 통해 현행 ‘노동가압류’ 사건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거래관계에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가압류 절차에서 노동3권 행사의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보려고 한다. 여기에서 ‘노동가압류 사건’이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사용자가 단체교섭, 정의행위, 조합활동 등 노동3권 행사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들을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가압류 신청을 하는 사건을 의미한다. 실무상 별도로 노동가압류 사건으로 분류하여 처리하지는 않지만, 노동가처분 사건의 경우 법원도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심리하고 있으므로 노동가압류 사건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2. 한국옵티칼에서의 해고 경위

니토덴코는 구미시에 소재한 채권자와 평택시에 소재한 한국니토옵티칼⁵⁾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일본회사다. 채권자와 한국니토옵티칼은 니토덴코에서 원재료를 구매하여 LCD등에 들어가는 편광필름 등을 생산한 후 가공·재포장한 후 각 엘지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에 납품한다. 채권자와 한국니토옵티칼의 공동대표이사 중 일본인 대표이사는 모두 하기와라 미치히로니이다.

채권자는 2003. 경 자본금 220억 원을 투자하여 구미제4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시작하면서, 50년간 무상임대, 법인세·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았다. 채권자는 2017. 경 약 700명을 고용하여 7,843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중국 공장으로 생산물량을 이전하면서 2차리에 걸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고 그

5) 니토덴코가 100% 출자하여 1999. 11. 5. 설립한 회사로 경기 평택시 천북읍 현곡산단로 40에 소재한 공장에서 액정표시 장치용 광학필름의 제조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결과 2021. 경에는 직원 수가 80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채권자는 2022. 경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중국 공장의 가동이 어렵게 되자 신규로 100여 명을 채용하여 공장가동율을 높였고 직원 수도 2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채권자의 생산직 근로자들은 주로 편광필름 생산공정의 후공정인 가공(광학필름을 자르는 타발 작업)과 박스같이 작업에 종사하였는데, 3분의 2 이상은 박스같이 업무를 주로 하였다. 박스같이 작업은 중국공장에서 생산된 광학필름 박스를 뜯어 간단한 외관 및 품질 검사 후 재포장하면서 ‘Made in Korea’ 라벨로 바꾸는 작업이다. 박스같이 작업은 별도의 기계나 장비가 필요 없고 작업에 필요한 작업 공간과 간단한 도구만 있으면 된다.

니토덴코는 2016년 9월경 채권자 구미공장과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의 편광필름 생산공정 중 후공정 부문의 통합운영 준비를 위하여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에 근무하던 후공정 관련 관리자 및 생산직 20~30여 명을 채권자 구미공장으로 배치하여 준비작업을 하기도 했다. 니토덴코는 당시 평택공장에서 내려온 기혼자들에게는 사택을 제공하고, 미혼자들에게는 기숙사를 제공하면서 통합운영 준비를 하던 11월경 금속노조가 설립되자 잔류를 원한 1명만 최종적으로 채권자의 구미공장으로 전적하였고, 나머지는 다시 평택공장으로 재배치하였다.

채권자의 구미공장에서는 2022. 10. 4. 화재가 발생하여 생산설비가 전소되었다. 이에 니토덴코는 채권자의 구미공장에서 가공·박스같이를 하여 엘지디스플레이에 납품하던 제품의 가공·박스같이 업무를 한국니토옵티칼의 평택공장에서 하도록 하였다. 니토덴코는 공장 문을 닫을 예정이라면서 생산직 및 관리직 근로자 수백 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한편 한국니토옵티칼에서 안정적으로 가공·박스같이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자 2022. 12. 13. 임시주주총회에서 채권자 회사를 청산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니토덴코는 같은 날 한국내 판매전담법인인 한국니토덴코 홈페이지에 니토덴코 이사회에서 채권자의 구미공장 재개를 검토하였으나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과 한국 지역 이외의 디스플레이 시장변화 등을 고려하여 생산 재개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다른 현장에서의 대체 생산을 통해 고객에 대한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공고하였다.

채권자의 감사보고서상 화재 등으로 회사 자산이 전손처리 되는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소금액은 약 882억 원이고, 기타 위험 담보에 대한 보험금까지 고려하면 최대 약 1,373억 원이다. 채권자가 온전히 공정을 재건하기 위해 필요한 최대 금액은 약 677억 원 정도이지만, 니토덴코는 위 보험금을 받아

채권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대신 한국니토옵티칼로 하여금 하도록 하였다.

채권자는 2023. 2. 2. 채무자들을 포함하여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17명에 대하여 해고처분을 하였다.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은 기존 구미공장에서 하던 작업을 위하여 생산직을 추가 고용하였다.

한편 채무자들 및 금속노조는 채권자는 위장폐업을 하고 실질적으로 한국니토옵티칼의 평택공장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위장폐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한국니토옵티칼에게 전부 또는 일부 영업양도를 하였으므로 한국니토옵티칼이 채무자들을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2023. 2. 1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4. 14.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4/부노15 병합사건). 채무자들 및 금속노조는 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2023. 5. 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8. 3.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3부해623/부노89 병합사건).

채무자들을 포함한 해고노동자 13명과 금속노조는 2023. 9. 5.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6952호 사건).

3. 가압류제도의 일반적 절차

가. 가압류제도의 의의 및 특징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박탈하는 보전처분의 한 종류다. 보전처분이 본안소송과 구별되는 특징은 크게 신속성, 기습성(밀행성), 재량성, 독립성, 잠정성, 종속성으로 설명된다.

- ① **신속성** : 가압류 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가처분 중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 ② **기습성(밀행성)** :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재산상태나 다툼의 대상의 현상변경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미리 알게 되면 그 효과가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채권자 측의 주장만 심리하여 발령한다.

- ③ **재량성** : 보전소송에서는 신속성·기습성 vs. 재판의 적정성이라는 두 개의 요구가 충돌된다. 개별 사건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조화시켜 판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법원은 심리방법에 관하여 많은 재량을 가진다. 변론을 거칠 것인가, 서면심리에 의할 것인가, 소명만으로 발령할 것인가, 담보를 제공하게 할 것인가. 담보의 종류와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은 모두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제280조(가압류명령) ①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④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나. 가압류의 요건

(1) 피보전권리

보전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체법상 보전을 받아야 할 권리(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76조). 피보전권리는 ①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일 것, ② 청구권이 성립되어 있을 것, ③ 통상의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일 것이 요구된다.

(2) 보전의 필요성

가압류는 집행불능 또는 집행의 현저한 곤란이 있는 경우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여기에서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란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을 그대로 놓아두면 장래 금전채권에 기하여 본안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집행이 불능으로 돌아가거나 집

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책임재산의 낭비, 훼손, 포기, 은닉, 염가매매 또는 채무자의 도망, 주거부정, 빈번한 이사 등을 들 수 있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법 IV 55쪽 참고)

다. 심리방식의 특징 및 증명의 정도

가압류는 신청서에 첨부된 소명방법인 서면만으로 신청의 당부를 심리하고, 채권자 심문절차도 거의 거치지 않는 것이 실무이다. 가처분 중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대해서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도록 되어 있다.

보전처분절차에서 사실인정은 증명이 아닌 소명에 의한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제301조). 신속성을 위하여 증명의 정도도 완화하여 소명으로 족하다고 보는 것이다. 증명은 사실의 존부에 대하여 법관이 확신을 가지도록 하는 입증행위다. 반면 소명은 증명에 비해 한단계 낮은 개연성, 즉 법관이 대개 그럴 것이라는 추측 정도의 심증을 가지게 하는 입증행위다.

라. 담보제공 명령

가압류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정적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부당하게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담보제공 명령은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주는 대신 나중에 보전처분이 부적절한 것이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담보액은 법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 법원마다 청구채권액과 가처분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담보액의 표준을 정하여 놓고 이를 토대로 담보액을 결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따른다.

담보액 산정기준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기타 재산권
청구채권액 (현금 또는 보증보험)	1/10	4/5	2/5

마. 채무자의 구제절차

가압류는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의 일방적 소명에 의해 발령되므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재산처분이 제한되어 큰 고통을 받게 된다. 이에 채무자가 가압류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281조) 취소신청(법 288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압류명령에 대한 이의는 가압류명령의 당부를 심사해달라고 주장하는 절차이고, 가압류 취소신청은 가압류명령 후 사정변경이 있거나 채무자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는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취소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절차다.

부당한 가압류(가령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경우)에 대해서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가압류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가령 판례는 가압류로 인해서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장애가 될 수는 없다고 보면서, 다만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한 것이 가압류로 인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가압류채권자가 처분지연이 다른 사정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였을 때 가압류와 처분지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대법원 2000다 71715 판결 등).

4.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가압류 사건의 진행 경과

가. 부동산·채권 가압류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카단10636 부동산 가압류

- 2023. 8. 17. 5명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청구금액 2억 원)
- 2023. 8. 23. 담보제공제공명령(채무자별 각 4백만 원, 전액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2023. 8. 25. 가압류 결정
- 2023. 9. 7. 채무자 5명에게 가압류 결정정보 발송
- 2023. 9. 7. 가압류 이의신청(2023카단10718)
- 2023. 11. 10. 가압류 이의사건 심문기일 지정(연기)
- 2023. 12. 1. 가압류 이의사건 심문기일 지정(연기)

- 2023. 1. 12. 가압류 이의사건 심문기일 지정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카단10659 채권(임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 2023. 8. 24. 5명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청구금액 2억 원)
- 2023. 8. 29. 담보제공제공명령(채무자별 각 1천6백만 원, 그 중 각 8백만 원은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2023. 8. 30. 가압류 결정
- 2023. 8. 30. 제3채무자들에게 결정정보/진술최고서 발송
- 2023. 9. 6. 채무자 5명에게 가압류 결정정보 발송
- 2023. 9. 7. 가압류 이의신청(2023카단10719)
- 2023. 11. 10. 가압류 이의사건 심문기일 지정(연기)
- 2023. 12. 1. 가압류 이의사건 심문기일 지정(연기)
- 2023. 1. 12. 가압류 이의사건 심문기일 지정

나. 채권자의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의 요지

(1) 가압류 신청서의 주요 내용

<p>(부동산 가압류 사건)</p> <p>채무자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가압류한다.</p> <p>라는 재판을 구합니다.</p> <p>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p> <p>청구금액 : 2억 원(최00 4천만 원, 유00 4천만 원, 황00 4천만 원, 이00 4천만 원, 나00 4천만 원)</p>	<p>신청취지</p>
<p>(채권 가압류 사건)</p> <p>1. 채무자들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각 채권을 가압류한다</p>	<p>신청취지</p>

<p>2.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들에 대하여 위 각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라는 재판을 구합니다.</p> <p>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p> <p>청구금액 : 2억 원(박00 4천만 원, 이00 4천만 원, 이00 4천만 원, 박00 4천만 원, 송00 4천만 원)</p>	
(공통)	신청이유
<p>1. 당사자들의 지위</p> <p>1. 이 사건의 경위</p> <p>3. 채무자들의 구체적인 불법행위</p> <p>4. 피보전 권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p> <p>가. 채무자들의 불법행위</p> <p>1)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p> <p>2) 업무방해</p> <p>3) 위법성 조각사유의 부존재</p> <p>나. 채권자의 손해</p> <p>5. 보전의 필요성</p>	

(2) 피보전권리에 대한 채권자의 소명 내용

채권자는 2022. 10. 4. 발생한 화재로 공장 정상화가 어렵다는 경영상 판단 하에 폐업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근로자 210명 중 193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였고, 희망퇴직을 거부한 채무자들을 포함한 17명에 대하여 2023. 2. 2.자로 통상해고하였다.

채권자는 2022. 12. 13. 해산등기 후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2023. 2. 14.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체결한 이 사건 부지에 관한 입주계약을 해지하였고, 원상회복 반환을 위하여 부지 내 공장동 및 노동조합 사무실 건물을 철거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후에도 채무자들은 금속노조 간부들과 청산 철회 및 고용

유지 등 법률상 근거가 없고 가능하지도 않은 요구사항을 내세우면서 이 사건 부지 내 노동조합 사무실을 무단 점거하면서, 공장동, 노동조합 사무실의 철거를 물리력을 동원하여 저지하는 등 불법행위를 통해 채권자의 소유권, 시설관리권(점유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에 해당하고,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의 실시 등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을 반대하기 위하여 무단 침입 및 점거 등의 행위를 하고 있고, 청산 업무 수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배타적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위법성 조각사유도 부존재한다.

채무자들의 시위 및 농성, 철거업무 방해행위로 인하여 철거공사가 지연되면서 한국산업안전공단에 1일당 약 147만 원, 매월 4,47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철거업무 지연에 따라 청산사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임금, 사무실 유지비, 경비용역업체 도급비 등 1일 당 320만 원, 매월 약 9,596만 원을 추가로 지출하여야 한다. 채무자들이 2023. 8. 7.부터 철거업무를 저지하고 있어 2023. 8. 24. 현재 채권자의 손해는 최소 8,406만 원 $[(147만 원 + 320만 원) \times 18일]$ 에 이른다. 채무자들이 불법행위를 중단하지 않는 이상 채권자의 손해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다. 채권자는 손해 중 일부인 4,000만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우선 주장한다(채권 가압류 신청 사건에서의 주장).⁶⁾

(3)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채권자의 소명 내용

채권자는 청산절차의 일부인 건조물 철거작업을 위하여 채무자들에게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계속하여 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행위를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을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임을 알렸고,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이외 다른 보유재산이 확인되지 않으며, 본안 소송에 대비하여 그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에 이전시킨다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불능 또는 집행에 현저한 곤란이 발생한다.

6) 회사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채권 가압류와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였는데, 각 신청에서 주장하는 손해액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채권 가압류 신청에서는 1일당 약 467만 원(임대료 1일당 147만 원 + 청산사무 직원 인건비 등에 소요되는 추가비용 320만 원),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서는 1일당 약 397만 원(임대료 140만원 + 청산사무 직원 인건비 등에 소요되는 추가비용 257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들의 이의 요지

(1) 채권자가 금속노조와 2022. 10. 21. 경 체결한 단체협약(유효기간 2022. 4. 1. ~ 2024. 3. 31.)은 유효하다.

채권자는 노조사무실을 포함한 공장 부지 내 모든 시설에 대하여 배타적인 점유·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채무자들의 활동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채무자들은 유효한 단체협약에 따라 고용보장 협의를 위하여 교섭을 요구하고 사업장 내에서 노조 사무실 등을 사용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 사용자의 소멸·변경에 따른 단체협약 효력 중단 시점 ☞ 청산절차 종료시점

“단체협약은 협약당사자 일방이 소멸하면 그 시점에서 종료된다. 법인의 경우 해산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법인격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기 때문에 단체협약도 청산 기간 중 존속하다가 그 청산절차가 종료하는 시점에서 효력이 중단된다”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주해 II(제2판) 333면]

2.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 ☞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

대법원은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고 하면서 제한적으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를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등).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의 해지는 단체협약의 노사관계안정기능이 희생되더라도 불가피하다고 생각될 정도의 비상사태 발생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사정변경에 의한 협약의 자동적인 실효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주해 II(제2판) 329~330면].

[사례1]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 ☞ 단체협약은 청산과정 회사와 노조 사이에도 유효함을 인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 30.자 2022카합50161 결정은 청산, 매각, 공장 이전 시 반드시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고용안정협약에 대하여 ① 해당 조

항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를 위배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상법이 청산 과정의 해고, 기타 근로조건이나 근로자 지위의 변동을 명시적으로 규율하지 않은 점 ③ 해고를 제한해도 사업 양도, 매각 시 고용승계가 가능하므로, 주주들의 전권사항인 해산결의와 양립 불가능하거나 이를 무용하게 만들거나 상법이 정한 법정청산절차를 불가능하게 한다거나 상법의 청산 관련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점 ④ 청산절차에 법인격은 존속하므로, 단체협약도 청산 기간 중 존속하며, 협약 당사자는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점 ⑤ 회사는 협약서 체결 이전부터 청산을 계획했고, 주주도 위 협약서 내용을 알면서도 해산결의를 하는 등 협약서 체결 당시와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⑥ 회사는 단체협약의 구속력을 배제하는 파산절차가 아닌 청산절차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회사가 노조와 합의에 따라 청산 과정의 해고를 제한하는 내용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사례2] 금속노조 동광기연지회 ☞ 청산과정 중 회사와 노조 사이의 단체협약 유효를 인정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17. 5. 19.자 2017카합10031 결정은 법인 해산 및 청산을 위하여 근로자 전원에게 해고통보를 한 것은 법인폐업/공장폐업이나 회사의 매각/양도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고용보장을 하도록 한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해고라고 보고 근로계약상 권리를 인정하고 매월 10일에 3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사례3] 금속노조 콜트약기지회 ☞ 공장폐업 후 노조사무실에 대한 단전단수조치는 업무방해에 해당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도 성립한다고 본 사례

1. 인천지방법원 2013. 1. 16. 선고 2012고단7901 판결은 공장폐업 이후 노조사무실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공장폐업 이후에도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권리구제 활동을 위하여 노조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1심에서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도 있었던 이상 해고와 공장폐업이 정당하는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해고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점유하면서 영위하고 있던 목적을 위한 단체적 활동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8. 선고 2014가단202699 판결은 위 콜트약기 해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회사측이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하여 단전단수를 한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보았다.

(2) 해고의 법적 효력을 다투고 있는 등 법적 구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채무자들과 노동조합은 채권자의 청산 결정은 계열사를 통하여 사실상 영업을 계속하면서도 노동조합을 협오하여 위장폐업을 한 것이거나 또는 계열사로 영업을 양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채권자 및 한국니토옵티칼을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해고의 법적 효력을 다투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23구합 76952호 사건).

단체협약 제40조는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노동위원회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를 다투어 그 판단에 따라 복직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단체협약에 근거한 교섭요구를 채권자측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채무자들은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채권자측에 고용보장 등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채권자측은 공장건물 및 노동조합 사무실 철거를 위한 협의 이외에 교섭은 불가능하다면서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단체협약 제41조는 “분할, 합병, 양도 시 조합원의 고용 및 근로조건 변동, 단체협약 변동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노사 동수로 구성된 고용안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141조는 “단체협약의 유효 기간 중 법령의 개정 또는 중대한 경제,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불가피하게 협약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구조조정 내지 조직변경, 기업변동 등 회사내부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4) 채권자는 구미시로부터 공장동 철거공사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⁷⁾

채권자는 공장동 건물 철거와 관련하여 공장건물 철거를 위한 해체계획서를 구미시에 제출하였으나, 구미시로부터 공장철거공사 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해체계획서에 대한 적정 의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등 객관적으로 공장동 철거공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채무자들의 노동조합 사무실 사용 및 사업장 내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재산권이나 시설관리권의 침해도 없다.

7) 공장부지 내에 있는 건물 중 채권자가 철거하려고 하는 건물은 공장동 건물과 노동조합 사무실이다. 이 중 공장동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구미시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미시장으로부터 해체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해체계획서에 대한 적정 의견을 받아야 한다.

(5)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사무실 등에 대한 점유·사용권 보유하고 있다.

채권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었으므로 채무자들이 더 이상 채권자의 허가 없이 이 사건 공장부지에 출입하거나 노동조합 사무실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단체협약 제6조, 제15조 등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사업장 내 조합활동 및 자유로운 출입 등을 보장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회사가 공장동 철거공사 허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사무실에서 퇴거하라고 하면서 철거를 시도하는 것은 단체협약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지에서 공장동과 노조사무실이 차지하는 규모, 각 철거에 소요되는 시간, 채권자가 주장하는 손해와 채무자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였을 때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

참고로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다3347 판결도 사용자가 무상제공한 노동조합 사무실은 민법상 사용대차에 해당하므로 단체협약 해지만으로 노조사무실 반환 사유인 사용수익의 종료 또는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의 경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6) 채무자들의 행위와 채권자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채권자는 자신이 부실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하여 구미시장으로부터 허가도 받지 못하고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해체계획서에 대한 적정 의견조치 받지 못하여 공장동 철거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채무자들로 인하여 자신이 지출하지 않아도 될 1일당 약 147만 원의 토지사용료와 1일당 320만 원의 청산사무 업무비 등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 채권자는 자신의 귀책사유에 따라 부담해야 할 '경비'를 마치 '손해'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을 뿐 채무자들 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소명하고 있지 않다.

(7) 피보전권리 존재뿐만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채무자별로 객관적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활동을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가압류 신청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개별 조합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피보전권리뿐만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채무자별로 객관적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소명되어야 한다.

(8)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은 집행불능 또는 집행을 현저한 곤란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개별 조합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가압류 신청을 하였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채권자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노동조합 사무실 명도 및 철거공사 방해금지 가처분을 하였는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카합10018호 사건), 해고노동자들만을 상대로 한 가압류 신청과 달리 금속노조,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유타칼지회까지 채무자에 포함시켰다. 상식적이라면 최소한 집행을 어려움이 없는 금속노조까지 포함해야 한다.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의 목적은 집행불능·집행의 현저한 곤란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괴롭힘 목적이다.

5. 노동3권 행사 제한을 최소화하는 가압류제도 운용의 모색

가. 노동가압류 사건 판단기준 마련의 필요성

가압류 절차에서는 회사가 노동자들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하면 사실상 그대로 불법행위로 인정된다. 법원은 채권자의 일방적 주장이 기재되어 있는 서면과 소명방법만 보고 대강 그러할 것이라는 심증만 가지면 되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 한 기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반면 채무자는 가압류 명령이 발령되기 전까지 반박할 기회가 없다. 노동조합 등과 분쟁상태에 있는 회사가 조합원들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기 제격이다.

아래에서는 법원이 노동가압류 사건에 대하여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동3권 행사가 제한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절차를 운용하고 판단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에서 노동3권 행사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노동가처분 사건으로 분류하여 심리할 때 적용하고 있는 판단 기준, 법원이 가압류 사건에서 신속성·밀행성과 재판의 적정성이라는 가치를 조화시키기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실무상 기준, 보전처분 남용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에 제시되었던 방법 등을 참고하고자 한다.⁸⁾

8) 법원도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남용에 대해서 법원도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전소송을 담당하였던 판사들이 작성한 「보전처분의 남용 및 해결방안」에서는 소명(보다 엄격한 소명 요구, 항변사유의 부존재나 재항변사유의 존재에 관한 소명책임을 사실상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안,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심리를 충실히 하고, 보전처분 요건의 서명 정도에 있어 채무자측 사

나. 노동사건의 특성을 고려한 신중한 심리

법원은 노동가처분 사건의 경우 노동3권, 노사관계의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매우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75754 판결은 “사용자는 기업시설에 대한 방해 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노동조합과 그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구하거나 같은 내용의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이때 헌법이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고, 노동쟁의의 유동성에 비추어 법적 간섭은 최소한도에 그치는 것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노사의 이해의 대립은 노사대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주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보전의 필요성이나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도의 신중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다.⁹⁾

법원실무에서도 “노동가처분은 대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서 만족적 가처분으로서, 가처분 결과가 당사자에게 주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처분이 변경되더라도 채무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 곤란하다. 또한 법원의 판단이 단순히 사건의 승패를 떠나서 전체 노사관계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크므로 심리에 신중을 기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심문기일이나 변론을 열어 당사자에게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유무에 관하여 충분한 주장과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 원칙이고, 특히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고 보면서 노동가처분 사건에 대해서는 노사간 자주적 교섭을 촉진하는

정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방안), 담보(현금공탁 비율을 높이고, 담보제공 액수를 사안마다 달리 정하는 방안), 손해배상(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통상손해를 넓게 인정하고,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도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 심문(채권자 심문제도 확대, 이의·취소 사건의 신속처리) 등으로 구분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심승우, 이혜민, 「보전처분의 남용 및 해결방안」, 『민사집행연구』, 2013년 통권 9호, 226-300쪽 참고)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 10. 28. 선고 2015카합3053 결정도 “쟁의행위는 노사간의 대립, 긴장 속에서 유동적으로 발전하기 마련이어서 그 중 어느 한 단면만을 뽑아내어 전체를 불법적인 쟁의행위라고 가볍게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쟁의행위에 위법한 측면이 있다고 하여 법률의 근거도 없이 선불리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행위의 정지·방지의 금지청구권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더구나 과거 일정한 시점에 위법한 쟁의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을 이유로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행위의 정지·방지의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무색하게 할 우려가 크므로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한 바 있다.

방향에서 신중히 심리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지켜왔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법 IV(2014), 409쪽].

회사측에서 주로 쟁의행위나 조합활동 등을 위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신청하는 노동가압류 사건은 노동3권 보장의 중요성, 노사간 대립·긴장 관계, 유동적 상황 전개라는 측면에서 노동가처분 사건의 본질과 다르지 않다.

법원은 노동가압류 사건도 민사상 재산거래에서 발생한 분쟁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채권자의 일방적 주장만 담은 서면과 소명방법만 보고 기계적, 정형적 판단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전처분이 채권자의 집행 불능이나 현저한 곤란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의 적정성을 위해서는 분쟁의 원인, 채권의 종류, 채권의 발생 원인,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관계 등 분쟁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 서면심리 방식을 보완하기 위한 채권자 심문 방식의 채택

실무상 가압류 사건은 형식적인 서면심리만으로 형식적인 담보제공과 함께 발령하고, 이는 노동가압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다. 반면 채무자는 가압류 명령이 발령되기 전까지 아무런 반박의 기회를 얻지 못한다.

노사관계는 매우 유동적이다. 가압류나 가처분 명령 자체는 노동분쟁의 양상이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런데 분쟁의 진행 방향에 따라 쟁의행위나 조합활동 등에 대한 정당성 평가가 종국적으로 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채권자의 일방적 주장·소명만을 근거로 쟁의행위나 조합활동 등을 대강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가압류 결정을 하는 것은 노사간 자주적 교섭을 저해하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노동가압류 사건에 대해서는 심리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채권자 심문 방식을 채택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법원도 실무적으로는 가압류를 포함한 보전처분 사건 서면심리 중 소명방법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당사자 주장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주장을 석명하게 하거나 소명방법을 보충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심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법 IV(2014), 81쪽].

실제 법원에서 부실한 서면심리를 보완하기 위하여 채권자 심문을 진행하여 보전소송에서의 심리를 내실화하고자 하는 시도를 한 사례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 9. 1.부터 청구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모든 가압류신청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 일방을 심리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

법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에서도 채권자 심문을 시도하였다. 재판부는 채권자 심문 절차에서 소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구두로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담보 제공명령을 내렸다.¹⁰⁾ 그러나 법원별로 재량에 따라 시도하였던 가압류 사건에 대한 채권자 심문을 현재는 거의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3권 보장의 중요성, 대립·긴장을 전제로 하는 노사관계의 특성, 분쟁상황의 유동적 상황 전개라는 노동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노동가압류 사건에서 채권자 심문을 실시하여 심리의 충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

라. 채무자의 항변사유와 채권자의 재항변사유에 대한 소명 요구,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 문서의 제출 등

노동자 입장에서 신속성·밀행성을 특징으로 하는 가압류 절차의 가장 큰 문제는 가압류 결정까지 아무런 반박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채권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분쟁의 상태 및 쟁점을 파악한다. 이해관계가 대립·충돌하는 노사관계에서 상호 정당성을 주장·관철하고자 할 때 일방의 주장만으로 분쟁의 전체적 상황과 쟁점을 파악하는 것은 위험하다. 따라서 노동가압류 사건에서는 채무자들이 채권자의 주장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항변, 이에 대한 채권자측의 재항변에 대해서까지 사용자에게 소명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노사간 분쟁이 되는 고용, 임금, 노동조건, 노동조합 활동 등에 관한 처분문서이므로, 그 내용에 따라 노사간 분쟁에 대한 법적 판단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노동가압류 사건에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와 충돌하는 내용이 있는지, 만약 충돌하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이유 등까지 소명하도록 하여 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례도 회사측 주장과 소명방법만 보면 그럴듯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주장하는 회사 청산 결정, 통상해고, 공장부지 원상회복 의무, 채무자들로 인한 철거공사 지연이라는 일련의 사실들에 채권자가 구미시로 부터 철거공사 허가를 얻지 못한 상황이라는 사실과 단체협약에 따른 협의 요구 및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의무 등의 사실이 개입되는 순간 채권자의 일방적 주장·소명만으로 불법행위로 평가하는 것은 어려워질 수 있다.

10) 이상덕, 「가압류신청 사건에서의 채권자심문 방식에 관한 비판적 고찰」, 『인권과 정의』 2012년 5월 호, 155~171쪽 참고

마. 보전의 필요성 관련 노동조합의 재산상태에 대한 우선 소명, 개별 채무자별 구체적 소명

법원은 가압류 신청 시 채권자는 피보전권리와 별도로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고, 채무자별 소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원은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채권자는 집행불능과 집행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을 표시하여 심리의 대상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집행불능 또는 현저한 곤란은 개개의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 279조 제1항 2호가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를 의미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보전의 필요성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한 채 집행불능 또는 집행의 현저한 곤란이 있다고만 주장하는 때에는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요건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법 IV 55쪽 참고)¹¹⁾.

다만 이러한 판단기준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무에서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례와 같이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주장·소명이 없어도 채권자측의 정형화된 주장만으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가압류 이의사건에서 노동조합의 충분한 자력을 고려하여 개별 노동자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본 사례도 있다. 울산지방법원은 채권자 현대중공업이 채무자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박OO(지부장), 백OO으로 하여 받은 예금채권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위 채무자들의 이의를 한 사건에서, 개별 노동자들인 채무자들과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채무자 노동조합이 책임을 이행할 충분한 자력이 있다면 개별 근로자들인 채무자들의 재산에 별도로 가압류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채무자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에 대한 가압류 신청에 대해서만 인가 결정을 한 바 있다(울산지방법원 2019. 11. 18.자 2019카단14691 결정).¹²⁾

11) 법원실무제요에 따르면 법원은 실무상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피보전권리의 금액, 채무자의 직업·경력·신용상태·자산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통상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부채상황, 채권자의 청구에 대한 채무자의 응답, 채무자의 영업상황, 채무자의 경제적 파탄 등을 알려주는 사실의 유무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소명하여야 한다. 법원은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순으로 보전의 필요성을 용이하게 인정하고, 특히 영업매출채권, 영업자에금채권, 임금채권,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채무자 입게 되는 손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오히려 부동산 등 다른 목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고도의 소명을 요구한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법 IV 56쪽 참고).

12) 현대중공업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회사 분할에 반대하며 파업을 하고 임시총회 개최를 방해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사건이다. 현대중공업은 손해액 중 22억원

법원은 노동가압류 사건에서 채권자로 하여금 1차적으로 노동조합의 책임재산에 대해서 소명하도록 하고, 노동조합의 책임재산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노동자들에 대해서까지 가압류 해야만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까지 채무자별로 소명하도록 하는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형화된 주장·소명방법에 대해서 기계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통상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채무자별로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도록 해야 한다.

바. 신속한 이의 및 취소 절차의 진행으로 채무자들에게 반박 기회 부여

채무자는 반박기회를 전혀 얻지 못한 상태에서 가압류 결정 사실을 알게 된다. 이에 대해서 불복하는 방법은 크게 이의신청과 취소신청이 있다. 이중 특히 가압류 결정의 당부를 다투는 이의 신청사건의 경우 신속하게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의 주장·소명에 대하여 충분히 반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9년 사이 전국 법원의 가압류 신청 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은 10일 내외다. 반면, 같은 기간 가압류취소 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은 50일 내외고, 가압류이의 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은 150일 내외다.¹³⁾ 법원마다 처리기간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신속성·밀행성을 요하는 가압류 신청사건에서는 사실상 정형화된 심리만으로 발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청접수에서 결정단계까지 큰 시일이 걸리지 않는다. 반면 채무자가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취소신청을 한 경우 또는 가압류결정의 당부를 다투는 이의신청의 경우 변론기일 또는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하는 절차를 거치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처리기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

(청구금액 : 채무자 노동조합 20억원, 채무자 박OO, 백OO 각 1억 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가압류 이의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 박OO, 백OO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피보전권리는 보전처분 단계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소명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노동조합에게 충분한 자력이 있고, 채권자가 청구금액을 증액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채무자 노동조합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추가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보았을 때 채무자 박OO, 백OO에 대한 가압류 결정은 보전처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13) 연합뉴스 2020. 10. 15. 자 보도 “신속이 생명인데... 춘천지법 가압류 재판 처리일 극과 극” 기사 참고 한편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202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지방법원에서 처리한 가압류사건은 179,229건이고, 평균 처리일수는 9.9일이다. 사법연감은 가압류 이의사건 처리기간은 별도로 구분하여 공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압류의 사건의 경우 채권자의 일방적 주장·소명만으로 가압류결정이 난 상태에서 결정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므로,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분쟁상태가 계속된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조합원들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특히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최소한 청산사무가 종료될 때까지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사용하고 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 점, 회사가 철거공사 허가를 얻지 못하여 공사지연에 대한 책임이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들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조합활동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조합원들의 재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4천만 원씩 가압류를 한 것은 집행보전의 목적이 아니라 괴롭힘 목적이라는 점을 주장·소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의사건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면서 노사관계에서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채권자측의 의도가 일정 정도 관철되고 채무자들의 심리적·경제적 압박은 가중되고 있다.

6. 끝나지 않은 손해배상·가압류의 고통

2003년 1월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의 분신을 계기로 손해배상·가압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자 당시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은 민주노총을 방문하여 “조합원 개인과 보증인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제도개선을 약속했고, 노동부 장관은 2003년 3월 10일 언론인터뷰에서 사용자에 의한 손해배상 가압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¹⁴⁾

당시 IMF 이후 경기불황, 신용불량자 수 증가 등으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이 급증하였고, 금융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아무런 담보제공명령없이 가압류결정을 하는 등 90% 이상 담보없이 가압류명령이 남발되어 문제가 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달호 열사의 분신으로 가압류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자 정치권에서도 제도개선을 약속하였고, 이를 계기로 법원에서도 2003년 9월 22일 전국법원 신청담당 판사 30명이 모여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남용을 막기 위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전국법원 신청담당 판사 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위 판사회에서는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의 채권

14) 민주노총 정책기획실, 「손배·가압류로 인한 노동탄압의 실상과 해결방안」 참고. 당시 민주노총이 집계한 손배·가압류 현황은 2003년 10월 31일 기준 총 5개 사업장, 손해배상청구 575억 원, 가압류 781억 원이다.

보전이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이탈되어 채무자에 대한 압박용 또는 권리실현의 편법적 수단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는 문제 의식 하에 심문제도 활용 확대, 현금공탁 비율 확대, 이의소송의 심리방식을 개선하는 등 신속한 채무자 구제절차 진행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003년 법관회의의 논의 내용이 반영되어 보전처분 심리와 결정 실무 관행이 일부 변화되기도 하였다.

당시 민주노총에서 사용자의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한 민주노총의 제도적 해결 방향은 1) 노조법 개정을 통한 단체행동권 보장, 2)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제한, 3)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상과 범위 제한, 4)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가압류의 금지¹⁵⁾ 등이다.

노동가압류 사건의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가압류결정이 있게 되므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안소송에서 다투도록 하고,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에서 제안하였던 원조 노란봉투법에서도 빠져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7. 나가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사례는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가압류 폭탄까지는 아닐 수 있다. 그러나 회사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면서도 동일한 사실 관계를 기초로하는 가압류 신청에서는 제외했다. 피보전권리(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4천만 원으로 하면서도 10명의 노동자들에 대해서 각 청구금액을 4천만 원으로 하였고, 법원은 부진정연대채무 법리에 따라서 그대로 가압류 명령을 발령했다.

분쟁상태의 채권자에게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는 가압류 절차에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부진정연대채무 법리가 결합한 것이다. 회사는 매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4천만 원이라는 총알 한 방으로 다수의 노동자들을 겨눌 수 있게 되었다. 법원에서 잠정적이거나 가해자로 몰린 조합원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항변할 기회를 얻는 것도 쉽지 않다. 노동가압류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15) 당시 민주노총이 내놓은 가압류 금지의 개정안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기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한 가압류는 금지된다” 는 조문을 노조법에 포함시키자는 것이었다.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부진정연대채무 법리는 정부나 자본이 불법과업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주장할 때 든든한 논리적 지원군이었다. 고용노동부는 2023. 11. 9. 자 개정 노조법 2·3조 관련 Q&A에서 개정 노조법 제3조 제2항이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민법의 기본원칙으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부진정연대책임을 노동조합에 한해서만 제외하”는 것이라면서 일일이 불법행위자별로 손해액을 발생시켰는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원군을 빼앗기면 싸움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폭탄이라는 상징을 투하할 수 없다면 총이라는 효율성을 활용하면 된다. 위법행위가 되지 않는 정당한 쟁의행위, 조합활동 등의 범위가 넓어지지 않는 이상 사용자들이 든 손해배상·가압류라는 무기가 무용지물이 될 리는 없다. 끝.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투쟁과 가압류 이후 노동권 침해 실태

최현환 / 지회장,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가압류 통보로 돌아온 ‘교섭요구’

회사는 무엇때문에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면서 조합원 전체를 상대로 손배가압류를 하였을까요. 13명의 조합원 중 자기명의로 된 10명의 조합원에게 부동산과 전세보증금까지 가압류를 걸어 노동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을까요.

화재가 발생한 게 노동자의 잘못입니까? 설비 유지보수를 하지 못한 회사의 잘못을 왜 노동자들에게 감당하라고 합니까? 외투기업이 노동자를 해고하고 화재 보험금과 청산 자금을 가지고 자국으로 먹튀하는데 정부는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공장을 지키며 고용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한 게 손배가압류를 할 정도로 회사에게 손해를 준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노동자들은 여러 차례 교섭을 통해서 고용문제를 해결 하고자 하였으나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단 한 번의 교섭을 응하지 않았습니다. 교섭을 요구한 게 법을 악용하여 가압류라는 카드에 들고 생존권을 위협할 일입니까? 우리는 단 한 번의 교섭자리가 필요할 뿐입니다.

폐업기간 중단된 적 없는 사업

저는 20대에 입사를 해서 40대까지 가장 빛나는 내 인생을 회사를 위해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가 있었기에 회사는 2004년 공장이 가동될 때부터 작년 10월 불이 나서 폐업할 때까지 7조7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

니다. 니토덴코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서 18년간 세후 이익만 2천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새발의 피였습니다. 6조 원가량의 원재료 판매비와 로열티까지 총매출액의 82%를 일본으로 챙겨갔습니다. 니토덴코가 회사에 투자한 금액은 220억 원에 불과합니다.

니토덴코는 국내에 구미공장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뿐 아니라 평택에 같은 제품을 만드는 한국니토옵티칼도 갖고 있습니다. LCD 편광필름을 만들어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엘지디스플레이에, 한국니토옵티칼은 삼성디스플레이에 각각 납품했습니다. 2022년 6월부터 회사가 100여 명을 신규채용하고 있었다는 점은 생산 물량이 상당기간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회사는 청산 통보를 하기 전에 이미 물량을 니토옵티칼(평택)로 빼돌려 대체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구미공장에서 생산하던 물량을 평택으로 이전한 후 한국니토옵티칼은 매출액이 603억 원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간 최대수익을 냈습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폐업했지만 중단된 사업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위장폐업이 아니면 뭐가 위장폐업입니까?

노조무력화와 탄압

2016년 노조가 만들어지고 회사는 두 번의 구조조정을 했고, 500명이 넘는 조합원은 56명만 남게 됐습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기존 노동자들을 마구잡이로 잘라내는 한편, 계약직을 수시로 뽑았습니다. 이렇게 무참하게 사람을 자르는 것이 노조무력화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회장이 된 후, 회사에서 ‘노사관계가 악화되면 조기폐업한다’는 본사 입장을 전달했을 때 고용을 지키기 위해 많은 것을 양보하고 참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회사는 피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폐업통보를 받고 해고된 저희를 상대로 손배가압류를 걸고, 단전단수를 자행하고, 형사고소로 출석요구서가 쌓일 정도입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물량을 가져간 평택공장(니토옵티칼)은 9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일합니다. 구미공장(한국옵티칼)의 물량을 생산하기 위해 평택공장은 30명을 채용했습니다. 남은 12명의 고용승계가 정말 어려운 일입니까? 왜 안 됩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협박과 괴롭힘으로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회사를 보면서 이번만큼은 외투자본의 위장폐업과 먹튀, 노동탄압과 인권탄압을 용납할 수 없다는 각오가 생겼습니다.

나와 가족의 주거와 생존에 대한 위협, 가압류

회사는 우리의 전세보증금과 부동산을 가압류하면서 가족까지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법을 악용한 사측의 노동자 죽이기입니다. 회사가 가압류한 집과 임차보증금은 자녀들과 함께 살기 위해 평생을 모아서 마련한 집이고, 이제 막 결혼을 해서 신혼 살림을 꾸미며 살 집이며,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 가까이 이사를 해야 할 전세보증금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손쉽게 가압류가 되어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조합원 가운데 한 분은 8년차가 되었을 무렵, 업무 스트레스로 왼쪽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많이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산재도 신청하지 않고 일해왔습니다. 그렇게 15년을 열심히 일했는데, 사는 집에 가압류가 들어 왔습니다. 그 집은 조만간 팔아서 주택으로 이사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간병인이 필요한 양가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살 계획이 손배가압류에 막혀 아무 것도 실행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우리가 공장철거방해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아직 공장철거계획이 승인 되지 않았는데 무슨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대화로 고용에 대한 문제를 풀어 보자고 요청하였으나 단 한번도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는게 회사입니다.

악의적인 손배 가압류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것이 아니라 대화로 고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우리는 교섭을 원합니다.

최장기간 노동사건 가압류, 쌍용차 정리해고반대파업에 대한 가압류 사례

김득중 / 지부장, 쌍용자동차지부

2009년 정규직 2646명, 비정규직을 포함한 3000여 명의 정리해고에 맞선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77일간의 옥쇄파업은 길고 치열한 투쟁으로 정치적,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고 경제위기 시 자본의 책임전가에 맞선 노동자투쟁의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투쟁이었다. 또한 당시 총 노동과 총 자본의 대리전 양상으로 진행된 쌍용차 투쟁은 민주노조 운동의 명운을 건 한판 투쟁이었지만 경찰 특공대의 살인 진압에 의해 공장 밖으로 밀려나와 해고자복직과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의 긴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10년 만에 해고자복직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손해배상의 문제는 14년째 피고로 재판을 이어오고 있다.

1. 2009년 탄압현황

1) 구속

- 금속노조 지부 단일사건으로는 최대인 95명 구속.
- 퇴거불응, 업무방해 등 조합원 186명 벌금형.
- 검찰의 구속형량 합계 300년이 넘음.

2) 손배가압류, 구상권 청구 (총 429억원)

- 회사 가압류: 쌍용차지부 한상균 지부장 외 상집간부 9명(5억 청구)
- 회사 손해배상: 쌍용차지부 및 간부, 조합원 등 76명(100억 청구)

- 회사 손해배상: 민주노총, 금속노조, 사회단체 등 61명(100억 청구)
- 회사 가압류: 쌍용차지부 조합원 2명(50억 청구)
- 경찰 손해배상: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 및 조합원 103명(24억 청구)
- 경찰 가압류: 쌍용차지부 간부 및 조합원 65명(20억 청구)
- 회사 가압류: 쌍용차지부 간부 및 조합원 65명(20억 청구)
- 메리츠 보험사 구상권 (110억 청구)

3) 징계단압

- 해고 34명, 정직62명, 경고·견책·감봉 30명,의결보류 5명

2. 대법원 파기환송 전, 손해배상금 액수

가. 회사 측 제기 손해배상청구

- 1) 법원 인정 손해배상 원금 : 3,311,400,000원. 약 33억 1천만원
- 2) 법정이자
 - a 2011.1.12 ~ 2013.11.29.(소장 송당일): 약 2년 10개월 , 민법상 지연이자 이율 연 5% 적용, 2013.11.30 ~ 소송촉진법상 이자 연 20% 적용 = (약 68억 원)
- 3) 합계 : 약 101억 1천만 원

나. 국가(경찰) 제기 손해배상청구

- 1) 고등법원 인정 손해배상금 가운데 금속노조 부담 원금 : 1,128,308,876원(약 11 억 3천만원, 점거과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85,190원(2009.7.16 점거과업 연 대 집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500,000원(원고 김표연에 대한 배상금)

= 1,128,894,066, 약 11억 3천만 원
- 2) 법정이자
 - a 2009.8.6 ~약 6년 9개월, 민법상 지연이자 연 5% 적용, 2016.5.13 ~ 소송촉진법상 지연이자 연 20% 적용 19억 3천만 원

3) 합계 : 약 30억 6천만 원

다. 패소 확정 시 발생하는 원고들에 대한 재판 비용을 물어주어야 하는 부분은 일단 논외로 계산함.

- 총 131억 4천만 원

3. 현재 쌍용차 손배(회사, 국가) 소송 경과.

가. 쌍용자동차(주) 제기 손해배상청구.

a 1심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3.11.29. 선고, 약 33억 1천만 원 배상 판결.

b 2심 서울고등법원 2019년.11.15. 선고, 원피고 모두 항소 기각, 원심 유지.

c 3심 대법원 2023.6.15. 선고, 파기환송. 22억1940만원으로 청구취지 감축.

- 2021. 9. 30 기일이었으나 당일 선고가 연기됨. 그즈음 국가 제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국회 차원의 소 취하 결의안이 나와 국가 손해배상소송의 이후 진행 상황을 살피려 했거나, 당시 쌍용차 자본이 인수 문제 등을 고려한 판단일 수 있음. 2015년 노사합의로 조합원 개인 손배는 취하, 금속노조를 상대로 한 손배만 진행.

d 파기환송심 진행중.(2024. 1.19. 2차심리)

재판부의 조정의사 표명, 회사측 조정 동의 노사협의를 통한 원만한 합의 피력.

나. 국가 제기 손해배상청구

a 1심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3.11.29. 선고

b 2심 서울고등법원 2016.5.13. 선고, 1심 판결 일부 변경. 약 11억 3천만원원 배상 판결.

c 3심 대법원 2022. 11.30 선고.“경찰의 진압은 위법했고 노동자는 투쟁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국가가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였다는 취지 파기환송.

- 2018.8.28.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위원회의 쌍용차 파업 강제 진압 관련 조사 결과 발표와 인권 침해 사항 개선 권고. 이후 2019.7.26.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의 쌍용차 파업 등 공권력 남용에 의한 피해자 대상 사과가 이어짐. 그러나 손배소 취하는 배임의 이유를 들어 거부. 2021.8.31. 경찰의 쌍용차 노동자들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d 파기환송심 2023. 결과 이후 법무부 입장“노조의 점거파업시 경찰의 공권력 행사 방식과 한계와 관련해 추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e 대법원 재상고 진행중.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법무부 언론을 통해“노조의 점거 파업시 경찰의 공권력 행사 방식과 한계와 관련해 추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입장 피력.

- 2023. 9. 20. 기 확정된 손해액 3억2442만여원은 금속노조 결정과 쌍용차공장안 동료들의 모금으로 법원에 변제 공탁함.

다. 가압류

a 퇴직금 압류 6억 7천만 원(67명)

b 부동산 압류 2억 2천만 원(22명)

- 총 8억 9천만 원, 대상자 중에는 손배소송 1심과 2심에서 법적 책임이 없음을 확인됐음에도 퇴직금과 부동산 압류는 물론 피고로 대법원까지 재판을 이어옴.(2019년 가압류 철회)

4. 손배 당사자들의 트라우마 진단 배경

2018년, ‘2009년 쌍용차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국가로부터 국가폭력을 인정받았으나, 경찰이 제기한 손배청구소송은 끝내 취하지 않음. 2022년 3월, 최근 대법원에 장기 계류중인 손배소송을 두고 불안을 호소하는 당사자들이 발생함. 이에 지부에서 트라우마 진단을 위한 심리검사의 필요성을 제기.

2009년 이후 서른명의 희생자가 나왔으나 당사자 개인을 대상으로 국가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시도한 적은 없었음. 이에 손배소송 중인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트라우마 검사를 실시함. 국가폭력과 국가손해배상의 심각성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 당사자들이 용기를 내 결정함.

- 참여대상 : 국가손해배상소송 당사자 103명 가운데 쌍용차 소속 67명.

- 경과 : 국가 트라우마센터를 통해 평택 인근 병원을 추천받고, 2022년 3월부터 7월까지 1차 진단이 나온 24명의 진단서와 2명의 사망진단서를 1차로 8월 30일 대법원에 제출함.

- 진단내역 요약: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21명),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3명)

- 공통진단: 2009년 파업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또는 불안 및 우울장애를

진단 받음. 24명 모두 재판과정이 주상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소견과 더불어 현재 진단서를 제출한 24명 모두 1년 이상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임.

5. 나오며

쌍용차 소송기간 14년은 시민단체 손잡고가 기록한 손배소송 가운데 가장 오래 지속되고 있는 소송으로 기록되고 있다. 장기간 소송이 지속되는 동안, 개인의 자유, 사회 구성원으로서 부여된 권리, 가족의 일상까지도 모두 위협받아왔다(30명의 가족과 동료의 죽음).

특히 손배 뿐 아니라 가압류제도로 인해 입은 피해 역시 막대하다. 2019년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로 국가폭력을 확인받은 후에도 10년만에 복직한 노동자의 임금, 상여금의 50%를 가압류함에 따라 손배가압류제도의 악랄함이 다시금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사회적 여론이 들끓자 그제서야 법무부는 10년만에 가압류를 해제했다. 당시 가압류 대상자 중에는 손배소송 1심과 2심에서 법적 책임이 없음이 확인된 이들도 다수 포함되었다. 그렇게 10년만에 가압류는 해제되었지만, 10년동안 퇴직금과 부동산이 묶여야 했던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도 보전 해주지 않는다. 피해회복은 오롯이 노동자들의 몫인 것이다.

또한 경찰은 재판결과에도 가압류에 이어 계속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며 이들을 손해배상소송이 ‘피고’에서 제외시키지 않았다. 2018년 돌아가신 김주중 조합원 등 2명의 사망자는 사망진단서 제출한 이후에야 ‘피고’에서 제외되었다.

이처럼 쌍용차 국가손배는 국가폭력의 일환으로 제기된 소송이며, 국가로부터 국가폭력을 인정받고도 취하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국가폭력을 지속시키는 수단이 되었다. 쌍용차 국가손배는 대한민국 손해배상 현실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다. 기업 뿐 아니라 국가가 나서 노동권을 전면 제한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수단으로 악용한 사례이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점거’파업이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그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인과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못 박으며, 헬기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의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그럼에도 아쉬운 점은 파업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파업 배경에 경영상위기를 초래한 경영자의 과실이 있음에도 파업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한 손배가압류 제도의 본질적인 문제는 고스란히 남았다는 점이다. 특히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지되어온 가압류로 인해 당사자들의 고통을 가중되었던 바, 가압류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필요성

을 이 자리를 빌어 재차 제기하고 싶다.

아울러 국가의 재상고에 따라 본안소송인 손배소 역시 소취하가 되지 않는 한 쌍용차와 국가폭력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당사자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제2, 3의 쌍용차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위기감을 호소한다. 노조법 2,3조 개정,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시행 공포되어야 한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가압류 결정의 부당성

정영훈 / 교수, 부경대학교 법학과

1.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의 부당성

(1)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 10명을 채무자로 하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부동산·채권 가압류 신청에 대해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 내린 가압류 결정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도 없이 일반적인 가압류제도의 원칙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채권자의 채권 보전이라는 이익을 중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노동3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당하다. 발표자가 지적한 대로 “분쟁상태의 채권자에게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는 가압류 절차에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부진정연대채무 법리가 결합”함으로써 이중으로 사용자의 이익만을 고려하고 있다.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결정이 가압이고, 4천만원의 손해배상이라는 점에서 종래 문제되었던 손배소가압류 폭탄은 아닐 수 있지만, 이러한 결정이 개별 조합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매우 크다는 점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가압류는 조합원들로 하여금 단체행동권 행사를 주저하게 하는 위축효과를 초래하게 가능성이 매우 높다. 노사관계에 있어 근로자 측의 협상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심지어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단체행동권의 헌법상 보장을 형해화할 위험도 존재한다. 중국적으로는 노동조합 탈퇴를 강제함으로써 조합을 붕괴시킬 위험성마저 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이번 결정을 하면서 이

결정이 노동3권을 제한하고, 단체행동권 침해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고 있지 않는 듯 매우 신속하게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3) 가압류 결정이 노동3권 보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이와 같이 크다는 점이 쉽게 예측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발표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법원은 노동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심리하면서 서면심리 방식을 보완하기 위한 채권자 심문 방식을 채택하고, 채무자의 항변사유와 채권자의 재항변사유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며 보개별 채무자별 구체적 소명 신속한 이의 및 취소 절차의 진행으로 채무자들에게 반박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적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어야 한다.

(4) 입법자가 ‘실체적 기본권의 보장’과 ‘형식적 절차의 형성’ 사이에 존재하는 밀접한 상호 연관관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절차법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¹⁶⁾은 헌법에 의해서 입법권을 부여받은 입법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헌법에 의해서 사법권을 부여받는 법원에게도 동일하게 통용된다. 서면심리 방식을 보완하기 위한 채권자 심문 방식을 채택하는 등의 절차 등의 채택과 신속한 이의 및 취소 절차의 진행은 법원의 재량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5) 대법원은 회사가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의 간부들 상당수와 노동조합 자체에 대하여는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정리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고용관계를 정리하지 아니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청구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¹⁷⁾한 적이 있다.

그러나 울산지방법원 2019. 11. 18.자 2019카단14691 결정 및 대법원 2023.06.15 선고 2017다46274 판결의 취지에 따를 때, 가압류가 조합원들의 노동3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려면, 발표자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노동가압류 사건에서 채권자로 하여금 1차적으로 노동조합의 책임재산에 대해서 소명하도록 하고, 노동조합의 책임재산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노동자들에 대해서 까지 가압류 해야만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까지

16) 한수웅, "절차와 조직에 의한 기본권 보장", 중앙법학 제18집 제1호(2016), p.131.

17) 대법원 2006.09.22 선고 2005다30610 판결

채무자별로 소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의 귀속주체이라는 원칙이 훼손되고, 그 결과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6) 가압류제도의 특징이 신속성과 기습성에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해도, 신속한 이의 및 취소 절차의 진행으로 채무자들에게 반박 기회 부여함으로써 채무자들의 노동3권의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보면, 2023. 9. 7. 가압류 이의 신청이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심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 대한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투쟁력과 교섭력은 심대하게 훼손되고 단결 자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 또한 법원이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조합원들의 노동3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노동법적 문제의 핵심

(1)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채무자들의 행위와 채권자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향후 이의 절차에서 법원이 이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

(2) 하지만,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법적 공세는 이에 그치지 않으리라는 점도 분명하다. 현재도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내용의 가처분이 신청되어 있고 관련 본안 소송도 줄줄이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일련의 소송에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법적 공세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행 법과 판례법리상 위법행위로 포섭되지 않는 정당한 쟁의행위 등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난관을 극복하여야 한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부동산·채권가압류신청서를 보면, 위법성 조각 사유의 부존재를 들고 있다. 특히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을 인용하면서 노조가 청산 및 통상해고라는 채권자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을 반대하는 집단적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3) 이 점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의견표명에서 현행 노조법상의

노동쟁의 개념의 개정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① 노동쟁의 개념의 중요성은 노동조합법상 정당한 쟁의행위로 나아갈 수 있는 전제 요건이라는 데 있다.
- ②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2006년과 2017년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정당한 쟁의행위(파업) 목적에 대한 현재의 좁은 해석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원청에 대한 단체교섭한 승인을 요구하는 것도 불법파업이 아니라고 한 바 있다¹⁸⁾
- ③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고용상 불안정성과 근로자 지위 및 노동조건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와 같은 문제는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적 힘으로 근로자들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실익이 절실한 문제라 할 것이므로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 ④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헌법은 노동3권의 목적을 ‘근로조건의 향상’으로 명시하고 있고(제33조 제1항), 「노동조합법」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입법목적으로 하고(제1조) 있음에도, 이를 구체화하는 법률이 단지 ‘근로조건의 결정’으로 노동쟁의 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자칫 노동조합 활동의 여지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정’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 노동조합법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결정”을 삭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동쟁의 정의 조항 개정은 과거 IMF 시기 후퇴된 노조법의 정의 개정을 정상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1997년 새로이 노동조합법을 제정하면서 종래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되어 있었던 노동쟁의의 정의를 ‘은근슬쩍’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변경하였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은 이를 1997년 이전의 모습으로 돌리는 것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구 노동쟁의조정법(현행 노동조합법 이전의 법률)과 유사하다.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는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정의했고, 이에 관해 판례는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의 ‘노동쟁의’의 정의에서 말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이란 개별적 노동관계와 단체적 노동관계의 어느 것에 관한 주장이라도 포함하는 것이고,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상의 권리의 주장(권리쟁의) 뿐만 아니라 그것들에 관한 새로운 합의의 형성을 피하기 위한 주장(이익쟁의)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은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이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18) 350th Report, Case No. 2602, para. 681.

(4) 물론 노동쟁의의 정의를 변경함으로써 쟁의행위의 대상도 함께 확대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특히 이번 법률개정안으로써 구조조정과 경영해고(정리해고)를 정당한 쟁의행위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가 변경될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다만 판례는 쟁의행위를 정의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6호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에서 말하는 ‘그 주장’을 노동쟁의를 정의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5호와 연결하여 해석하였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5호, 제6호 각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노동쟁의 과정에서 사용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고용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구조조정의 실시 및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은 헌법 제33조가 보장하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하는 행위라고 판단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릴 수 있을 것이다.

(5) 공교롭게도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100% 모회사인 日東電工가 소재하는 일본 노동법학계의 통설적 이해는 경영에 관한 사항이라도 그것이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고용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경우에는 단체교섭의무가 있으나 쟁의행위도 정당하다는 데 이론이 없다.¹⁹⁾

더욱 공교롭게도 일본은 이미 1960년대부터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논의가 시작되어 1970년대에는 노동위원회와 하급심 판결을 통하여 광범위한 지지를 받게 되었고, 1995년 최고재판소 판결²⁰⁾에 의해서 사용자가 개념의 확대가 인정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은 현재까지 견지되고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사용자 개념을 넓게 인정하게 된 배경에는 60년대 경제불황 하에서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빈번한 폐업 결정, 그리고 외부인력의 활용 증가 등과 같은 경기변동과 구조변화 속에서 노동운동 진영이 모회사 및 원청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운동 방침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투쟁을 현장과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전개하였기 때문이다.²¹⁾ 일본의 경우 자회사 사업의 통폐합, 자회

19) 菅野和夫, 労働法, 弘文堂, 2019, p.903; 西谷敏, 労働組合法, 有斐閣, 2012, p.299.

20) 아사히(朝日)방송사건 최고재판소 판결(最高裁 1995.2.28. 선고, 최고재민사판례집 49卷 2號 559면)

21) 1960, 70년대 전국노동조합총평의회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이른바 “사용자개념 확대 투쟁”에 관한 기록으로는 平沢栄一, 『爭議屋 - 戦後労働運動の原点』, 論創社, 2009, 141-181면 참조; 浅見和彦, “日本の労働組合の變貌と現況”, 『社會政策』 第11卷 第3号(2020), 63면.

사의 해산이 이루어진 경우에 자회사 종업원들의 노동조합이 모회사에 대해서 고용안정 및 고용보장을 내용을 내용으로 단체교섭 요구에 있어서 모회사의 응낙 의무를 인정한 지방노동위원회 결정과 하급심 판결이 상당수 존재한다.²²⁾

(6) 비록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OECD 회원국인 일도 이 가이드라인을 수락하고 있는데, 日東電工그룹의 지속가능경영에 관한 방침 중에서 인권에 관한 기본방침²³⁾을 보면, “인권에 관한 국제규범에 근거하여 인권을 존중합니다. ... 만약 국내법령이나 사업활동을 하는 나라·지역의 법령·규제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과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적인 인권원칙을 존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있다. 이어서 구체적인 행동 과제로서 “이 방침을 이해하고 모든 사업활동의 기반의 하나로서 인권 실사(Due Diligence)를 실시하겠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Nitto그룹은 자신들이 존중할 인권에 관한 국제규범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국제인권장전(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LO의 노동의 기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ILO선언에 따른 중핵적 노동기준, UN의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 등 인권에 관한 국제규범을 지지한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청산 과정에서 모회사인 日東電工이 보여준 모습은 이러한 국제인권규범을 존중하고 지키려는 모습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려고는 노력과 진지한 대화보다는 고용보장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기성의 사실로 한 채 위로금 지급만으로 모든 책임을 다 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만약 이 사건이 일본에서 발생했다면,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이 일본에 소재하는 법인이었다면 日東電工은 필시 자회사 노동조합으로부터 청산결정 철회와 고용보장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 받았을 것이고, 이를 거부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단체교섭거부라는 판단을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부터 받았을 것이다.

日東電工은 사업활동을 하는 나라·지역의 법령·규제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과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적인 인권원칙을 존중하겠다는 다짐을 지켜야 할 때이다.

22) 이에 관한 자세한 소개는 강주리, “다면적 노무제공관계에서 단체교섭 응낙의무자 — 일본법의 논의를 중심으로 —”, 서울법학 제20권 제4호(2022), pp.343-346을 참조

23) <https://www.nitto.com/jp/ja/sustainability/social/human/>

토론 4

**노동사건에 적용된 가압류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

법무부

MEMO

MEMO

[자료집]<국회토론회>한국오티칼하이테크 손배가압류 사례를 통해 본 가압류 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발행일 2023. 11. 30

발행처 손잡고 (대표 : 박래군)

담 당 윤지선 활동가 02-725-4777

Copyright ©손잡고, 2023 ※본 자료는 손잡고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5-4777 회원가입 문의 sonjabgo47@gmail.com

홈페이지 www.sonjabgo.org 공식SNS [트위터](#) @sonjabgo [페이스북](#) @sonjabgo47

주소 03101 서울시 종로구 창신길 39-10, 1층

토론회 자료집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손배가압류사례를

통해

본

가압류제도의

문제점